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5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
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
박칠성, 박환희, 송경택,
신동원, 심미경, 옥재은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
이상욱, 이영실, 이종태,
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
최재란, 최진혁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4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여성기업 주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와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가함(안 제9조).
- 나.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및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여성기업 주간 개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함(안 제9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
에 관한 지원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여성기업 주간)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여성기업”이란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</p> <p>2. “여성경제인”이란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-----.</p> <p>2. ----- 법 제2조제2호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여성기업 주간) <u>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</u></p>

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
할 수 있다.